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옥외영업(테라스·야장)' 시설 기준 완화 및 서울형 상생 가이드라인 도입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 및 자치구별 옥외 영업 조례 「건축법」 제46조 및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전면공지 내 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도로점용허가 기준)
제안배경	상위법 개정 취지와 현장 규제 간의 괴리 발생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도 폭 확보(도로법) 및 전면공지 활용 제한(건축법) 등 타 법령 및 지자체 조례와의 기준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대비 유연한 행정 지침의 부재 최근 지역 상권에서는 옥외영업(야장 및 테라스 등)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인 현행 기준으로 인해 상권 활성화가 제약받고 있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인해 상인 간의 민원 접수 및 행정 처분이 반복되어 소상공인의 영업적 부담과 행정력 낭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가이드라인 필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및 '상권 활성화' 기조에 발맞추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목상권의 물리적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옥외영업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됩니다.

규제사항	○ 골목상권의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설 기준 현행 지침상 옥외영업 허가를 위해서는 통상 '최소 2m 이상의 보행로 확보'가 필수 요건으로 요구됨. 이는 도로 폭이 협소한 구도심 및 이면도로 골목상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인 기준으로, 결과적으로 다수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옥외영업 허가 요건을 물리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함. ○ 전면공지 등 사유지 내 여유 공간 활용의 제도적 제한 자치구별 건축 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전면공지(건축선 후퇴 공간)' 규제로 인해, 해당 구역이 상가의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옥외영업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됨.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동식 테이블이나 접이식 파라솔 등 단기적·가변적인 편의 시설물조차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유연한 영업 공간 활용을 저해하는 경직된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 영업 위축 및 행정력 낭비 골목상권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침(보행로 2m 확보 등)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합법적 영업 확장이 원천 차단되며, 장기적인 내수 침체 속에서 자립 동력을 상실하게 함. 생계형 옥외영업이 비자발적 위법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반복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며, 이는 지자체의 소모적인 민원 대응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함. ○ 제도 적용의 형평성 결여 및 상권 내 갈등 심화 보행로 확보 및 전면공지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형 상권 및 프랜차이즈와 달리, 구도심 영세 상권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규제 적용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함.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상생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탓에, 옥외영업이 상권 내 경쟁 업소 간 악의적 민원(생활불편신고 등)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지역 사회 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개선 필요성 (해결방안):

- 시간제(Flexible Time) 옥외영업 허용 및 탄력적 공간 기준 도입: 보행자의 통행량이 급감하는 특정 시간대(예: 18:00~23:00)에 한해 조건부로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심사 지침을 마련해야 함.

일률적인 '최소 2m 보행로 확보' 및 '전면공지 사용 불가' 기준을 탈피하여, 보행 유도선 설치 및 단기적 이동이 가능한 접이식 영업 시설물 사용을 전제로 해당 상권의 물리적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허가 기준을 도입해야 함.

- 상권 맞춤형 '상생 가이드라인' 및 상인 자율 책임제 운영: 통행권 보장, 소음 방지, 쓰레기 자체 수거 등 주민 상생 협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한 상권에 대하여 서울시가 '옥외영업 상생 구역(가칭)' 등으로 지정 및 관리함.

상인회의 자율적인 규제 준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행정 부서의 단속 및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악의적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참고사항) 시정 규제 철폐 모범 선례의 일관된 적용: 서울시는 이미 규제철폐안 제5호(공원 내 상행위 허용)와 제74호(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를 통해 유연하고 소상공인 친화적인 규제 완화의 성공적 선례를 남긴 바 있음.

생계형 골목상권의 옥외영업 지침 역시 이러한 서울시의 합리적인 경제 활성화 및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에 발맞추어 신속히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